

『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2월 2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3월 4일

제19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

2015년 4월 3일

제1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정책기획실장 황 필 섭

나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이 개정('14.5.28 공포, '14.11.29 시행)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,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, 성과평가 등의 기준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투명하고 계획적인 지방 보조금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보조사업 대상 적용(안 제4조, 부칙 제3조)
- 보조금의 예산편성(안 제5조)

-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6조 ~ 제9조)
-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(안 제25조)
-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(안 제26조, 안 제29조)
- 구미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폐지(안 부칙 제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, 제32조의2 ~ 제32조 10, 제60조
-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-3557(2014.08.12)호 표준조례(안) 시달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인 업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재정법」(‘14.5.28 공포, ‘14.11.29 시행)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방보조금의 집행관리,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및 정산·성과평가 등의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2016회계연도부터,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사업비 보조를 가능하도록 하고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보조단체의 운영비 지원을 불가하도록 하였으며,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, 지방보조금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,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

- 보조사업자가 다른 용도 사용, 법령 또는 결정내용을 위반하거나 거짓,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.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「지방재정법」 개정
에 따라 기존의 보조금관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것이
며,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(안)
에 따른 것임.
- 주요내용인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의 엄격한 제한, 예산 편성
전 지원규모 등에 대한 계획수립과 면밀한 심의, 투명성 제고
와 다양한 단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계획의 공고 및
공모절차를 통한 사업자 선정, 실적보고서 적합심사, 현지조
사, 매년 성과평가 및 3년 이상 계속지원 사업에 대한 유지
필요성 심의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,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
재산의 처분 제한 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문
제점들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타당한
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